

2. 所得稅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896號 1993. 5. 27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⑭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제120조제2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중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한다.

다만, 일시퇴거자가 거주자 본인이거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본래 주소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②(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5조제13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득공제시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현재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혼한 날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그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15조).
- 나. 부양가족공제등의 소득공제를 함께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중 취학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주는 바, 이 경우 일시퇴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시퇴거자가 본인,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함(령 제120조).

<법제처 제공>